

---

---

##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

인제대학교 간호대학

---

---

## 목 차

---

---

1. 개요 .....	1
2. 임상실습 및 교내실습 관련 학생안전관리 체계 .....	3
3. 임상실습 학생 인권보호 지침 .....	4
4. 사고유형 및 점검사항 .....	5
5.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	6

### 부록

1. 인제대학교 안전관리 규정 .....	7
2. 간호대학 학생건강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15
3.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표 .....	18
가. 연구실 일일점검표 .....	18
나. 연구실 안전교육 일지 .....	19
다. 집단연수 안전점검표 .....	20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	21
4. 사고발생 보고서 .....	23

# 1. 개요

## 가. 목적

- 임상실습, 교내실습, 교내외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사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처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적용 범위

- 임상실습, 교내실습
- 교내 각종 학생 자치행사 안전사고(축제, 신입생 OT,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 교내 각종 사고(골절, 타박상, 낙상, 폭행, 자살 등)
- 교외 단체활동 안전사고(봉사활동, 학술답사, LT 등)

## 다. 사고 대응 기본 지침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 피해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할 것
- 대외 언론과의 접촉은 대외협력팀으로 단일화 할 것
-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할 것

## 라. 교내외 행사 관련 학생안전사고 보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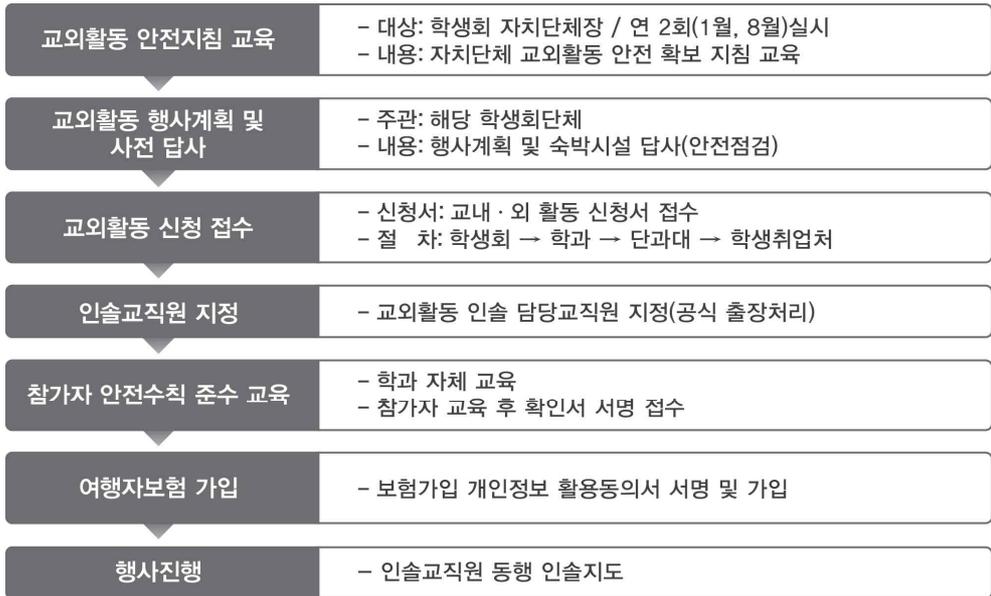
- 인제대학교 안전관리 규정(부록 1)에 따름
- 인제대학교 안전관리 규정 및 체계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 관련 주요 내용	
	구분	
	학칙	제21장 학생활동 제74조의 2(집단활동) ① 학생단체의 집단활동은 학생단체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 MT, 환영회, 축제 등의 행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음. 단, 신입생환영회 등 교외활동 관리지침은 따로 정함
	규정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장 학생단체 제9조(학생단체의 활동) ⑫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교수, 직원, 학생은 교내·외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 ⑬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권침해 행위자가 책임을 짐
지침	교내·외 활동에 관한 지침(2012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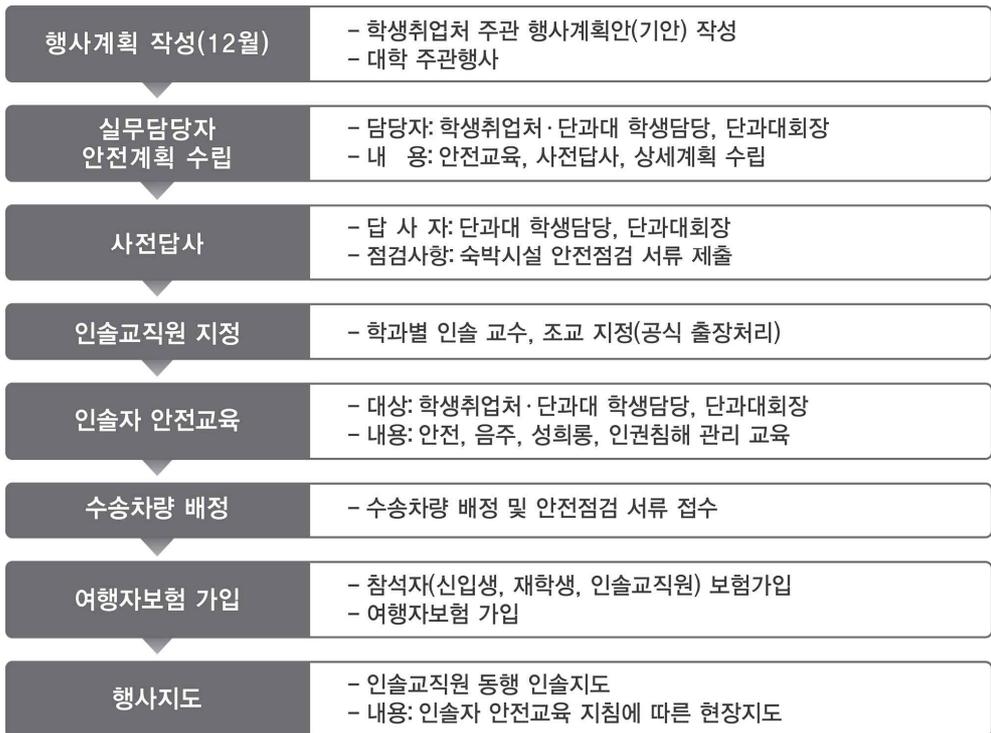
	제3조(동행지도의 원칙), 제4조(보험가입의 의무), 제5조(사전 교육 지도의 의무), 제11조(사고신고 및 처리), 제12조(지원 금지)
매뉴얼	집단활동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주요내용: 숙박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점검 사항, 보험, 답사, 안전교육, 인솔지도 관련 사항

안전관리 체계

• 학과 교외활동 안전관리 체계



• 입학식 및 신입생 O.T 안전관리 체계



## 2. 임상실습 및 교내실습 관련 학생안전관리 체계

### 가. 안전관리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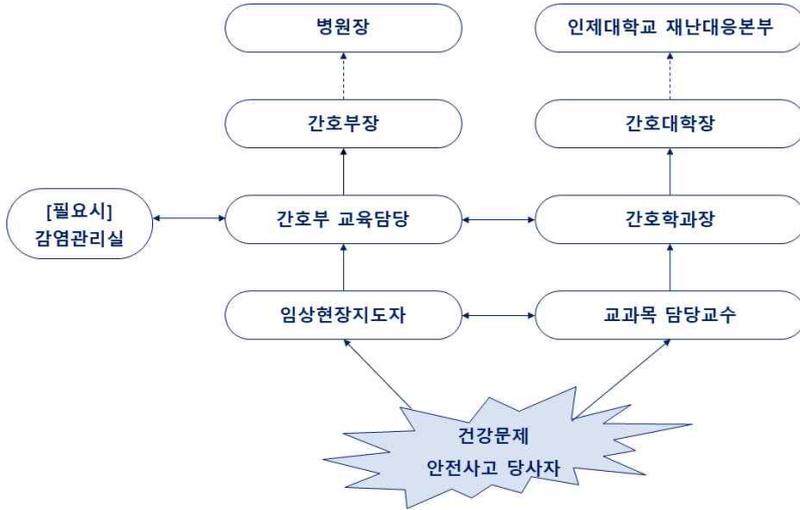
- 1) 실습학생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학약품, 항암제 등이 쏟아지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2) 눈이나 점막에 환자의 분비물, 이물질, 소독제가 들어가면 즉시 병원 규정에 따라 세척한다.
- 3) 검사실 방문 시 해당 검사실의 안전수칙을 사전 문의하고 지시사항을 숙지한다.(예: 영상의학과, 혈관조영실의 방사선 피폭 방지용 특수가운 착용)
- 4) 모든 간호활동에서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환자확인(동명 2인, 유사한 이름)은 두 가지 이상의 질문으로 철저히 확인한다.
- 5) 실습 장소에서 낙상이나 미끄러짐(바닥의 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 나. 감염관리 주의사항

- 1) 손 위생(적용증과 손 위생 방법 알기), 기침예절을 준수한다.
- 2) 무균술 준수
  - ① 요로 카테터, 말초혈관 카테터 삽입 시 감염관리지침 준수
  - ② 알코올을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부채질하지 않도록 함
- 3) 주사침 찔림이나 날카로운 기구 베임 주의
  - ① 주사침전용용기 사용(recap 금지), 혈당체크 후 lancet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
  - ② 혈액매개감염질환자(HIV양성,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의 혈액 및 체액 노출 주의: 접촉, 찔림, 눈/입 점막 노출 등 ⇒ 노출 즉시 부서실습 책임자(학교, 병원)에게 보고
- 4) 격리병실 출입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제거 준수. 특히, 공기매개감염질환자(활동성 결핵, 홍역, 수두)의 격리병실 출입은 자제하고, 출입 시 주의지침 확인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상태에서 출입한다.
- 5) 실습생이 감기, 독감, 피부질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역격리 환자 병실의 출입을 금함
- 6) 폐기물관리 준수: 알코올 슝, 수액세트, 주사기 등의 철저한 분리수거(예; 일반 쓰레기통에 알코올 슝 폐기 금지)
- 7) 위생관리: 손톱 길이는 짧게 하고, 팔찌 등 악세사리 착용 금지 및 간호처치 중 머리카락 오염 주의한다.
- 8) 일반적 감염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실습함

다.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1) 보고체계



2) 학생 주의사항

- (1) 학생은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 지도교원에게 연락한다.
- (2)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실습기관 응급실에 내원하고 추후 지시에 따른다.

3. 임상실습 학생 인권보호지침

- 1) 학과에서는 해당 실습 기관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실습 가능한 범위를 학생들에게 고지한다.
- 2) 학생은 실습 중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3) 학생은 실습 중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4) 학생은 실습 중 병원의 직원이나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에 노출되면 당사자에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즉시 간호단위 책임자와 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
- 5) 실습지도교원은 학생이 인권침해나 성희롱, 성추행에 노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간호단위 책임자와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6) 학과장은 협의내용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당국에 보고하고 해당 실습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 4. 사고유형 및 점검사항

##### 가. 임상실습 및 교내 실습실 실습

구분	행사 유형	사고 유형	예방 및 조치	담당(협조) 부서
교외	임상 실습	실습 중 안전사고 (타박상, 골절 등)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교외실습 조교
			현장지도 및 사고예방 교육실시	실습담당교수/ 실습현장지도자
			사고 응급조치	실습현장지도자 및 실습담당교수/ 실습기관 응급실 학과장
교내	실습실 실습	실습 중 안전사고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실습실 조교
			현장지도 및 사고예방 교육실시	실습실담당교수/ 실습실 조교
			사고 응급조치/ 119 구급대 후송	학교보건실/ 단과대학 행정실

##### 나. 교내외 행사

- 인제대학교 안전관리 규정(부록 1)에 따름

## 5.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구분	역할 및 조치 사항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학생: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지도교원에게 보고, 실습 기관 응급실 내원</li> <li>• 지도교원이 간호학과장에게 보고</li> <li>• 학과장: 대학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보험처리 및 행정 처리 협조</li> </ul>
교내실습 중 안전사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학생: 과목 담당교수 혹은 담당조교에게 보고, 학교보건실 방문하여 응급조치</li> <li>• 담당교수: 학과장에게 사고발생 보고</li> <li>• 학과장: 대학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후속초지</li> </ul>
교내외 안전사고자 또는 최초 발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의 경중 판단 -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생지원팀 신고</li> <li>• 위급 시 119 구급대 신고 및 후송</li> </ul>
단과대학 행정실(학과사무실) (단과대학 학생회 및 단과대학 주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조치 또는 환자 후송</li> <li>• 사고경위 파악 및 필요 시 학부모 연락 [중대 사안일 경우 총장(처장) 보고]</li> <li>• 학생처(학생지원팀)에 사고내용 보고 (붙임 : 사고경위 및 확인서 양식 참조)</li> <li>• 원활한 대외언론 대응을 위해 대외협력팀과 긴밀히 협조</li> <li>• 관련부서에 사고내용 보고</li> <li>•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학생복지팀) 또는 여행보험자 신청</li> </ul>
학생처(학생지원팀) (총학생회 및 학생지원팀 지원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조치 또는 환자 수송</li> <li>• 사고 경위 파악 및 중대 사안일 경우 총장(처장) 보고</li> <li>• 원활한 대외언론 대응을 위해 대외협력팀과 긴밀히 협조</li> <li>• 관련부서에 사고내용 통보</li> <li>•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학생복지팀) 또는 여행자보험 신청</li> </ul>

<부록 1. 인제대학교 안전관리 규정>

## 인제대학교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11.9.1.]  
[개정 2018.9.1.]  
[개정 2019.9.1.]  
[개정 2022.3.1.]  
[개정 2022.6.21.]  
[개정 2022.12.1.]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제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환경보건관리(이하 “안전관리”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직원, 학생 및 본 대학 내에서 활동하는 외부인과 방문객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안전관리란 안전환경보건에 관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대비, 유사시 비상대응에 관한 활동을 총칭하며, 관련법규와 교내규정의 준수활동과 자발적 안전개선활동을 포함한다.

###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 (안전관리의 주체) 안전관리의 주체는 안전환경보건에 관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본 대학의 각 대학(원), 학과(부), 연구소 및 행정부서를 포함하는 각종기관(이하 “각 부서”라고 한다) 내의 관련 활동자이다.

제5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본 대학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9.9.1.,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5조의2 (안전보건관리본부장) 대학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본부를 두고 교학부총장을 안전보건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

제6조 (안전관리책임자) ① 각 부서의 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1.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2. 부서별 세부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유지

3.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초기대응 및 비상연락
4. 사고의 보고
5. 부서활동자의 안전교육 확인 등

제7조 (분야별 안전관리부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 부서(이하 “안전관리부서”라고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동물자원센터 : 실험동물관리
2. 방사선안전관리실 : 방사선안전관리
3. 연구실안전센터 : 연구실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폐기물관리(실험폐기물), 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개정 2022. 6. 21.>
4. 사무처<개정 2019.9.1.>
  - 가. 관리과 : 소방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통학버스안전관리, 시설공사안전관리, 자연재난관리,  
폐기물관리(일반), 오폐수관리, 석면관리
  - 나. 총무과 : 교통안전관리(시설분야 제외), 교직원안전보건관리(건강관리 제외), 보안관리
5. 의무실 : 질병예방관리
6. 학생복지처 : 상해예방관리<개정 2019.9.1., 2022. 3. 1.>
7. 중대재해예방센터: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1., 2022. 12. 1.>

제8조 (분야별 안전관리요원) 각 안전관리부서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다음 사항을 수행토록 한다.

1. 안전관리주체의 안전규정준수에 관한 안전점검
2. 안전관리주체에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제공
3. 사고조사 및 보고
4. 비상대응계획수립 및 전파
5. 교내 타 안전관련 부서와의 협력지원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안전관리위원회

제9조 (위원회) 본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 안전관련 규정의 제·개정
2.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3. 안전관련 규정의 미 준수에 따른 제재나 우수부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발생한 안전사고나 현안의 사전 또는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
5.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위원은 기획처장, 학생복지처장,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방사선안전관리실장, 산학협력단장, 동물자원센터장, 의무실장, 의과대학장, 보건의료융합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문리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소프트웨어대학장, BNIT융합대학장, 약학대학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선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9.1., 2022. 3. 1., 2022. 6. 21.>

제 12 조 (임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안전관리부서, 각 부서를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여한다.

제 14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사무처에 둔다.<개정 2019.9.1.>

제 15 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필요시 안전관리총괄조정자 또는 각 안전관리부서의 발의로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안전관리의 범위

제 17 조 (가스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부서는 교내 고압(도시)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도시가스 도면 관리
2. 도시가스 제반시설 관리
3. 기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8 조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부서는 교내 주·정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내 출입차량에 대한 24시간 최적화를 도모하며, 과속이나 무질서로 인한 사고예방 및 무적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불법 주·정차 단속
2. 과속 단속
3. 기타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9 조 (통학버스안전관리) 통학버스안전관리부서는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 기타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통학버스 기사 안전교육

2. 통학버스 안전점검
3. 폭설, 폭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통학버스 운행 조정
4. 기타 통학버스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0 조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안전관리부서는 교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 중 인체, 재산, 환경 등의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안전교육
2. 개봉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안전교육
3.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누설점검
4.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검진
5. 개인피폭방사선량 파악
6. 방사선실험실 오염검사
7. 방사선실험실 안전문화 홍보
8. 기타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1 조 (보안관리) 보안관리부서는 교내 도난 등의 사고로부터 유형 및 무형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교내 출입관리
2. 보안카드관리
3. CCTV 설치 목적 외 활용 제한 및 관리
4.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2 조 (상해예방관리) 상해예방관리부서는 교내 재학생, 대학원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각종 행사(축제, 체전, 교내외 행사 등)참여 중 시설물에 의한 상해·후유장애·사망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의 대응 및 법적 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체육특기자의 상해보험처리
2. 기타 상해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3 조 (실험동물관리) 실험동물관리부서는 교내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실험동물의 입고 및 신청 관리
2. 사육시설의 이용 및 관리
3. 실험동물 사육관리
4.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
5.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리

6. 기타 실험동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4 조 (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부서는 교내 연구실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과 관련하여 인체, 재산, 환경에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을 통해 안전한 연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 설치·운영 신고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실 안전점검
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자 사고대응 및 보고
4.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5 조 (석면관리) 석면관리부서는 교내 석면재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 법률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석면지도관리
2. 석면해체, 철거시 노동부 허가사항 관리
3. 기타 석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6 조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부서는 교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자위소방대의 조직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3. 소방훈련 및 교육
4. 화기취급의 감독
5. 기타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7 조 (시설공사안전관리-외주포함) 시설공사안전관리부서는 교내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공사 시방서 등 제반 서류 관리
2. 현장의 안전 상태 점검 및 시정조치
3. 기타 시설공사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8 조 (연구실안전관리) 연구실안전관리부서는 교내 연구실 내에서 수행되는 교육·연구 활동 중 인체, 재산, 환경에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연구실 안전교육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연구실 안전문화 홍보
4. 연구자 건강검진
5. 연구자 상해보험 관리

6. 연구자 사고대응 및 보고

7. 기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9 조 (오폐수관리) 오폐수관리부서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점오염원(폐수처리장) 관리
2. 기타 오폐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0 조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부서는 교내 위험물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적법한 사용을 통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옥내저장소 관리
2. 실험·실습실 내 위험물 관리
3.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1 조 (자연재난관리-풍수해, 지진, 산불) 자연재난관리부서는 자연재해로부터 토지와 학생, 교직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조경지역 관리
2. 건물 상황 관리
3. 설비 시설 관리
4. 기타 자연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2 조 (교직원안전보건관리) 교직원안전보건관리부서는 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교직원 건강검진(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매년 실시)
2. 교직원 재해보상(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거)
3. 기타 교직원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3 조 (질병예방관리) 질병예방관리부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 및 과거에 창궐했던 재출현 감염병, 또는 수해지역의 수인성 전염병 등이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해외 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교내 확산 징후
2. 재출현 감염병의 교내 확산 징후
3. 각종 수인성 또는 식중독 질병의 교내 발생 징후
4. 기타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4 조 (폐기물관리-실험폐기물) 폐기물관리부서(실험)는 교내 실험·실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화학폐기물관리 및 처리
2. 의료폐기물관리 및 처리
3. 기타 실험 중 발생한 폐기물관리 및 처리
4. 기타 폐기물관리(실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5 조 (폐기물관리-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부서(일반)는 교내 일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3. 재활용 발생폐기물
4. 기타 폐기물관리(일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장 안전사고대응

제 36 조 (사고대응) 각 부서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초기대응 및 비상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해당 안전관리요원은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사고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며 필요시 안전관리총괄조정자를 통하여 교내 타 부서나 외부의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타 자세한 사고대응절차는 분야별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제 37 조 (사고보고 및 조사) ① 각 부서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일주일 이내에 각 부서장의 명의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분야별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서는 제출된 사고경위서를 검토하고 별도 사고조사 수행과 함께 사고재발대책을 수립하여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임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고정보를 교내외에 공표할 수 있다.

④ 기타 자세한 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분야별 관련법령 및 교내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38 조 (손해배상의무) 교직원 및 학생 등 본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발생시켜 본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39 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 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2. 간호대학 학생건강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간호대학 학생건강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6.3.1.]  
[개정 2013.11.1.]  
[개정 2014.9.1.]  
[개정 2015.9.1.]  
[개정 2018.2.23.]  
[개정 2019.3.1.]  
[개정 2020.9.1.]  
[개정 2022.8.1.]  
[개정 2023.8.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간호대학 실습운영 규정』에 따라 간호대학(이하 ‘대학’) 학생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

제2조(건강 및 안전관리자) ① 대학 행정실 직원 1인을 학생의 건강 및 안전관리자로 둔다.<개정 2022.8.1.>

② 각 부속병원은 해당 병원 직원 1인을 임상실습학생의 건강 및 안전관리자(이하 병원건강관리자)로 둔다.

제3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무) ① 학생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이하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우리나라 성인예방접종 권고안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상실습 학생의 경우 각 부속병원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안전의무) ① 학생은 본교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임상실습의 경우 학생은 각 부속병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감염성 질환에 이환되었다면 전파 가능한 전염 기간에는 임상실습을 중단한다.<개정 2020.9.1.>

제5조(안전 및 인권 교육) 대학은 학생에게 학교생활과 실습 중 안전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학생진료소) ① 학생의 진료를 위해 각 부속병원에 학생진료소(이하 진료소)를 둔다.

② 진료소 운영에 관해 이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는 것은 각 부속병원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자문의) ①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교내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간호대학 교수회의 제청이 있을 경우, 위 항의 교외 전문가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고 학장은 자문의에게 학생 건강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비용) ① 학생의 건강검진과 학생 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가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지원 금액은 간호대학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상실습의 경우 각 부속병원이 요구하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부속병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생이 부속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재학생 부속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④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속병원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개정 2022.8.1.>

제9조(보험) ①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하여 간호대학은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이때 보험금액은 학교가 지원한다.

② 건강보험의 내용과 지원 금액은 간호대학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비상연락망) ① 학생은 임상실습지역별, 임상실습기관별, 실습조별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갖춘다.

②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필요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고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 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쳐 학장이 최종 연락을 받는다.

제11조(보고의무) ① 건강 및 안전관리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서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를 보고한다. 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는 간호학과장에게 보고하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제12조(원거리실습 안전관리) ① 원거리 임상실습 담당교수를 지정하여, 학생을 관리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② 원거리실습 안전관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신설 2023.8.1.>

제13조(기타)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간호대학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학생건강과 안전관리 지침」으로 제정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연구실 안전교육 일지

연구실 안전교육 일지 (수업용)

<b>연구실 안전교육명</b> <small>(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 제20조 관련)</small>	신규교육 (2시간 이상)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 )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 미참석 사유		
	교육 대상자 수	명	명	명			
	교육 실시자 수	명	명	명			
교육 미실시자 수	명	명	명	명			
교육구분	1. 집합교육                      2. 위탁교육                      3. 기타교육( )						
교육방법	1. 강의식                      2. 시청각                      3. 현장교육                      4. 기타( )						
교육내용	(해당 내용 별도 기재 바람)						
교육강사	소 속	직 위	성 명	교육 일자	교육 장소		
및 장소							
<b>연구실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b> (필요 시 B면 추가 사용 가능)							
연 번	소 속 (학과/부)	성 명	서 명	연 번	소 속(학과/부)	성 명	서 명
1	간호학과			16	간호학과		
2	간호학과			17	간호학과		
3	간호학과			18	간호학과		
4	간호학과			19	간호학과		
5	간호학과			20	간호학과		
6	간호학과			21	간호학과		
7	간호학과			22	간호학과		
8	간호학과			23	간호학과		
9	간호학과			24	간호학과		
10	간호학과			25	간호학과		
11	간호학과			26	간호학과		
12	간호학과			27	간호학과		
13	간호학과			28	간호학과		
14	간호학과			29	간호학과		
15	간호학과			30	간호학과		

다. 집단연수 안전점검표

## 집단연수 안전점검표

점검일시 : '23.0.00.

점검자 : 00과 000 , 00과 000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O	X	특이사항
<b>집단연수(OT, MT 등) 안전관리</b>	각 학과(부)에서 점검 후 체크		
- 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였는지? * 건축물 인·허가, 숙박업소 등록여부, 숙박정원 허가 등			
- 행사 전 숙박시설을 답사하여 안전관리 실태확인을 확인하였는지?			
- 버스 등 이동수단 제반서류* 및 운전자 현황**을 확인하였는지? ** 보험증권, 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음주측정 등			
-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는지?			
- 음주, 폭행, 소방시설·대피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였는지?			
- 대학 주관 행사에 교직원이 동행하는지?(필수동행)			
[미흡 및 개선 필요사항] ○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			
사전 답사 사진			

라. 안전사고를 위한 확인사항

## 안전사고를 위한 확인사항

### 1. 교통안전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가?(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운전자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학생	안전교육 비상대처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및 음주여부는 확인하셨습니다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다가?	
연락망	비상 연락망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다가?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 2. 숙소 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하여 출발합니까?	

### 3. 화재 예방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전교육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출발 전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부록 4. 사고발생 보고서>

<b>사고발생 보고서</b>
-----------------

학과	학번	학년	이름	비고

**1. 사안 개요**

- 가. 사건 일시 :
- 나. 장소 :
- 다. 사건 내용(6하 원칙)

**2. 사안 경과(일자별, 시간대별)**

○

**3. 참고 사항** (정서행동발달사항, 성적, 성격, 가족관계, 교우관계, 주변환경, 기타)

○